

■ 규정명 : 감사위원회규정

■ 규정번호 : HC-조직-3

■ 주관부서 : 지원팀

■ 제정일 : 2000.09.20

■ 최종개정일 : 2012.03.23

■ 개정번호 : 8

■ 목차

- 1. 총 칙
- 2. 구 성
- 3. 회 의
- 부 칙

1. 총칙

1.1 목적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 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3 직무와 권한

1.3.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1.3.2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1.3.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.

1.3.4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1.3.5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2. 구 성

2.1 구 성

- 2.1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2.1.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2.1.3 위원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2.1.4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2.2 (삭제 2001.10.10)

2.3 위원장

- 2.3.1 위원회는 3.2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2.3.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2.3.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회 의

3.1 소 집

- 3.1.1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둘째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임시 위원회를 개최한다.
- 3.1.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3.1.3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3.1.4 위원회는 위원 전부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3.2 결의 방법

- 3.2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3.2.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3.2.3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.3 부의 사항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- (2)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1) 이사회에 대한 보고
 - 2) 감사보고서의 제출
 - 3)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
 - 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 - 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(3) 감사에 관한 사항
 - 1) 업무·재산 조사
 - 2) 자회사의 조사
 - 3) 이사의 보고 수령
 - 4)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
 - 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
 - 6)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한 승인
 - 7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 - 8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
3.4 관계인의 출석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3.5 간 사

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3.6 의사록

3.6.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6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3.7 감사록의 작성

3.7.1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3.7.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3.8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1.3.5, 3.2.2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